

분리장벽 설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판결과 팔레스타인인의 인권

성상희 회원¹⁾

I. 서론

올해 7월 8일 이스라엘 군의 이른바 ‘보호경계’(Operation Protective Edge)라는 이름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으로 시작되어 8월 5일 이스라엘 군의 철수로 잠정 종결된 또 하나의 작은 중동전쟁²⁾이 있었다. 2천명 이상이 살해된 전투로서 결코 작지 않은 비극이었다.³⁾ 이스라엘의 건국 직후 주변 아랍국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제1차 중동전쟁부터 시작하여 흔히 4차 중동전쟁이라는 불리는 1973년의 이스라엘-이집트 전쟁 이후에도 정치학이나 국제법에서 전쟁으로 불리는 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더 있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현재 지구상에 거의 유일한 장기 점령과 식민지 지배가 그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의 서안지구와 이집트 국경과 인접한 가자지구에서, 그리고 이웃 여러 나라에 흩어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점령권력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주요한 정책이 정착촌 건설과 분리장벽의 건설이다. 가자 및 서안지구라는 좁은 두 지역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분리장벽은 봉쇄와 감금의 상징이자 생활의 고통을 안겨 주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1) 국제연대위원회

2) 중동전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적 용어이다. 본래 중동(middle east)이라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대륙 넘어 터어키 지역을 아시아라 부르다가 이후 그곳부터 대륙이 끝나는 전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다. 그들은 유럽과 바로 붙어 있는 아시아 지역을 근동(near east)이라 불렀고, 대륙이 끝나는 지역을 극동 혹은 원동(far east)이라 불렀다. 순전히 유럽인들의 위치에서 아시아 지역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부른 것이다. 그래서 중동, 극동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지리학 용어가 아니며, 일정하게 인종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명칭이라 볼 수 있다. 이 용어 대신 객관적인 용어인 서남아시아(중동), 동북아시아(극동)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3) 전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66명의 군인과 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69명의 군인과 256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팔레스타인은 2천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하고 1만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그 중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주체마다 의견이 다르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의 자료에 의하면 2,131명이 사망하였고 그 중 민간인이 1,473명, 전투원이 279명,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379명이라고 한다. 가자지구 보건부, 국제연합, 인권단체들의 통계와 보고에 의하면 69 내지 75%의 사상자가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은 사상자의 약 50%가 민간인이라고 보고 있다.

II. 분리장벽 판결의 배경과 재판경과

1. 분리장벽의 건설

이스라엘의 분리장벽은 이스라엘 본토와 서안지구를 분리시키는 차단 시설을 지칭한다. 장벽은 아리엘 샤론 수상의 집권 2기에 속하는 2003년에 건설이 시작되었고, 본래 계획에 의하면 2005년 여름에 완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원에 제출된 다수의 소송으로 인하여 그 완성이 미루어졌다.⁴⁾ 제2차 인티파다가 시작된 2000년 9월 이후 대이스라엘 테러공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의하여 장벽의 건설방침이 결정되었다. 2003년 10월 이스라엘은 군사적 봉쇄구역으로서 장벽설치를 선언한다. 모든 이스라엘인과 유대인들은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반면에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얻어야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004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리장벽은 꾸준히 건설이 되어, 2011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완성부분 438킬로미터, 건설 중인 부분 58킬로미터, 계획된 부분 212킬로미터, 합계 708킬로미터에 이르고 있다.



4) 2004년 6월 30일, 이스라엘 최고법원은 예루살렘의 장벽의 일부부분은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미 건설되었거나 계획된 장벽 중 30킬로미터에 대해서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렇지만 장벽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안보의 수단이라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2005년 9월 15일, 최고법원은 다시 이스라엘 정부에게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벽의 노선을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스라엘이 계획하고 있는 장벽은 1949년의 휴전선⁵⁾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장래 성립할 주권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국경을 미리 침범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사실상 병합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고, 그 이후 역대 이스라엘 정부는 녹색선에 따른 국경확정을 거부해 왔다. 분리장벽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장벽은 콘크리트 기초에 5미터 높이의 철조망으로 구성되고, 4미터 깊이의 구덩이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장벽 양쪽으로 70미터에 이르는 군사적 봉쇄구역을 설치하고 그곳에 감시초소를 군데군데 설치하고 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약 25킬로미터에 걸쳐 8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설치되어 있다.

2. 국제연합의 관여

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03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스라엘의 장벽설치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당시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 공격에 대한 비난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영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독일, 불가리아, 카메룬이 기권하였다. 제출된 결의안 초안의 핵심내용은 “점령권력(Occupying Power)으로서 점령지 내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1949년의 휴전선과 어긋나는 벽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며, 중단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 유엔총회 결의

그 직후 유엔총회는 안보리에 상정된 결의안과 그 내용이 비슷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찬성 144, 반대 4, 기권 12표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미 상당 정도 건설이 진행된 장벽의 건설을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스라엘에 그 건설의 중단과 원상회복을 요구한 이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2003년 12월 유엔총회는 제10차 긴급특별회의를 소집하여 헌장 제9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벽건설에 관하여 국제사법법원에 권고 의견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결의안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9년의 제4차 제네바협약을 포함하여 국제법의 규정과 원칙, 그리고 안보리와 총회의 관련결의를 고려할 때,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서술된 바와 같은 동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점령권력인 이스라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벽의 건설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결과가 무엇인가?”⁶⁾

5) 이스라엘의 건국 당시 국경은 유엔총회 결의에 의한 유대인 구역과 아랍인 구역의 구분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는데, 1차 전쟁의 휴전결과에 따라 정해진 녹색선(Greenline)은 종전의 국경보다 더 확장된 영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결과를 승인하는 것이 되었다.

6) "What are the lega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being built by Israel, the occupying Power,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in and around East Jerusalem, as described in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considering the rules and principles of

3. 재판의 경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2004년 2월 재판이 시작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엔 참관국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법원은 아랍국가연맹이 입장을 제출하는 것도 수용하였다. 이스라엘은 재판 이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술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004년 7월 9일 법원은 의견을 확정하였다. 판결의 취지는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이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III. 판결의 주요 내용

1. 쟁점에 대한 답변

법원은 유엔총회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동예루살렘 내부와 주변을 포함하여 피점령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점령권력인 이스라엘에 의하여 진행되는 장벽의 건설은 국제법에 위반된다.

둘째,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반을 종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피점령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벽의 건설 작업을 즉시 중단할 의무, 그리고 이미 건설된 구조물을 해체할 의무를 지고 있다.

셋째, 이스라엘은 피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장벽의 건설로 야기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넷째, 모든 국가는 장벽의 건설로 인한 위법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고, 장벽 건설에 의하여 형성된 상황을 유지하는데 지원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다섯째, 국제연합, 특히 총회와 안보리는 장벽의 건설로 인한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 권고의견을 신중하게 참작하여야 한다.

2.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주요한 쟁점에 대하여 법리를 밝히고 있다. 판결의 법리전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권고적 의견 제출을 위한 해당 법원의 관할권. 둘째, 장벽의 국제법위반 여부. 셋째,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효과이다.

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유엔총회는 안보리가 취급하고 있는 분쟁 혹은 사태에 대하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of 1949, and relevant Security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여 안보리 요청 없이는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헌장 제12조⁷⁾에 근거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구한 총회 결의가 위법하며 따라서 법원의 관할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헌장 제12조 제1항의 “권고(recommend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래 총회와 안보리 사이의 관계는 세계평화의 문제에서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오래전부터 그 관계가 중첩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총회는 안보리가 특정 시점에서 어떤 사안을 직접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안보리가 관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장벽설치 문제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유엔총회의 법원에 대한 재판요청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정관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요청된 권고의견을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나. 장벽의 국제법 위반 여부

다음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될 국제법 규정과 원칙들을 검토한다.

첫째, 우선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고 확고한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하는 무력 위협 및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무력에 의한 영토획득의 금지, 그리고 인민들의 자결권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HLKO)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용된다. 이스라엘은 그 부칙에 의하여 헤이그 육전규칙을 제정한 1907년 제4차 헤이그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규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차 제네바 협약도 그 적용이 있다. 이스라엘은 협약 제2조가 점령지가 협약당사국 영토에 속할 때에만 협약의 적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요르단 점령지는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위 협약 제2조 제2항은 협약의 적용을 협약당사국의 영토 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셋째, 위 국제인도법의 규정들 이외에 국제인권조약 또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그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적용된다고 본다.

법원은 장벽과 부대시설물이 기성상태(fait accompli)를 창출하여 팔레스타인 영토를 사실상 병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장벽과 유대인 정착촌의 건설

7) 유엔헌장 제12조 제1항 “While the Security Council is exercising in respect of any dispute or situation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in the present Charter, the General Assembly shall not make any recommendation with regard to that dispute or situation unless the Security Council so requests.”

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나아가 장벽 건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수용(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 46조, 제52조와 제4차 제네바 협약 제53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 장벽은 점령지의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시민권 협약 제12조)를 침해하고, 사회권 협약과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규정된 일할 권리, 건강권, 교육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며, 나아가 인구학적 변화를 초래하여 제4차 제네바 협약 제49조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다. 법적 효과

법원은 장벽의 국제법 위반이 가져오는 법적 효과를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 유엔의 기관으로 나누어 각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이스라엘은 그 국제법상 책임에 근거하여 국제법 침해를 포괄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벽 건설의 중단, 이미 건설된 장벽구간의 해체, 보상의 예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폐기가 그것들이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이미 발생한 자연인과 법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둘째, 다른 국가에 대하여 법원은 현존하는 국제법 위반상황을 승인하거나 어떤 형태로건 그 상황을 유지하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제4차 제네바협약 당사국들은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는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셋째, 법원은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대하여 현존하는 국제법 위반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더 이상의 단계를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중동분쟁의 해결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국제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과 이웃국가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과 팔레스타인 국가의 건설을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VI. 판결의 의미와 팔레스타인인의 인권

1. 판결의 주요 쟁점

가. 분리장벽의 위법성

판결은 분리장벽의 건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이 점령권력에 의하여 피점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권의 침해로서 국제인도법의 대표적 규범인 헤이그 규칙과 제네바 협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보았다.⁸⁾ 이는 이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8)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and its associated régime, ar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나. 점령권력의 자위권 주장에 대한 배척

특정한 국가가 타 국가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무력에 의하여 점유하고 관리하는 상태를 국제법에서 ‘점령’(occupation)이라고 부른다. 점령을 하고 있는 주체가 점령권력이며, 점령권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행위에 대응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점령권력의 입장에서는 영토의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없는 상태이므로 자위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에서 나타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피점령민 팔레스타인인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규 군인에 의한 전투가 아니므로 점령권력은 항상 이를 테러 혹은 범죄행위로 보게 된다. 그러한 폭력 행사를 진압하기 위한 점령권력의 물리력 행사는 유엔 헌장 제51조⁹⁾의 자위권 행사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권고의견 판결의 효력과 국제정치

국제사법법원의 권고의견 판결은 말 그대로 권고를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며 재판 당사국 사이에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재판의 진행과 판결 결과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 판결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법법원 판결의 국제정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분리장벽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점령정책은 요지부동이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 의한 이스라엘의 점령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립된 안보리 결의 242호가 지적하듯이 무력에 의한 영토획득은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종전의 점령지 뿐 아니라 점령군이 철수를 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도 사실상 점령권력으로서 행동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뒷받침하는 이스라엘 지지 정책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21세기 최대의 수치인 식민지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지속시키고 있다.

3. 팔레스타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팔레스타인들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첫째 집단은 현재 가자와 서안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다. 이들 중에는 본래의 거주지가 현재의 지역인 경우도 있고 본인이나 부모, 조부모가 구 팔레스타인 지역¹⁰⁾ 출신으로서 전쟁으로 인한 난민인 경우도 있다. 외국으로 간 경우가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난민이 아니라 내부난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ople)에 해당하겠지만 통상 이들도 난민이라 부르고 있다. 둘

9)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이하 생략).”

10)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가 자신의 경계로 주장하고 있는 땅, 즉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 중 가자와 서안지구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째, 이웃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에 거주하거나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이 있다. 요르단 등 중동 3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난민이고 일부는 합법적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다. 위 3국에는 다수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수십년째 자리 잡고 있다. 셋째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인들이다. 이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이들은 이스라엘인이고 팔레스타인 인민(people)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스라엘인이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이등국민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불행한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의 경우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피해자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첫째와 둘째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연합이 2차 대전 후 유대인 구역과 아랍인 구역을 나누어 국가를 세우자는 결의를 하였을 때 유대인들¹¹⁾은 적극 찬성을 한 반면에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분할을 반대하였다. 지금은 대다수 팔레스타인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의 분할을 현실로 인정하고 2개의 국가, 결국 팔레스타인의 건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이스라엘은 두 개의 국가 해법을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권리는 팔레스타인 인민(people)의 자결권을 의미한다.¹²⁾ 한편 이들 팔레스타인인의 대다수는 난민에 해당하고 난민으로서 귀환의 권리와 재산 회복의 권리를 가진다. 독립국가 건설이 되면 결국 이들 난민 중 이스라엘 영토로 확정되는 지역 출신의 경우 귀환의 권리를 포기하게 될 것이며 재산 회복 혹은 보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V. 결어

분리장벽은 현 상태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가자와 서안지구에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분리장벽의 철거와 정착촌 건설의 중단 및 철거는 두 지역에서 사실상 식민지 주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최소한 인권 보장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 사이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11) 이를 적극 지지한 층은 주로 팔레스타인 이주를 결심하거나 실행한 시온주의자들이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오랫동안 아랍인과 함께 살아온 유대인들은 분리안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12) 법원은 장벽건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 행사에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인민(palestinian peop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인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수민족이라 하더라도 한 국가 공동체에 속하여 일정한 역사기간 동안 존속해 온 종족의 경우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위구르나 티베트를 자결권의 주체인 하나의 인민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많은 부분이 이를 인정할 코소보의 경우에도 ‘인민’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많았다. 이에 비하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독립국가 건설을 이를 자격이 있는 인민이라는 점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들이 이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